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99-24
----------	--------

제출일자 : 1999. 5 . 2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폐지사유

-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공중이용시설등관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 폐지

폐지근거

-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 행정규제계획 대상사무 일제정비 계획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